



영업 17년차 FP가 말하는 보장성보험 판매전략_02

강사: 문길성

Contents Flow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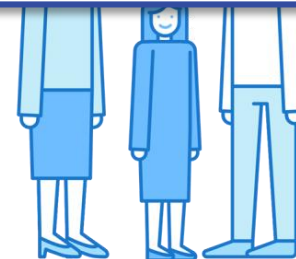
과정개요

- 1 종신보험 판매전략,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 Risk 집중
- 2 종신보험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
- 3 경영인정기보험의 탄생 비화 및 판매 전략
- 4 보장성보험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절세 전략



기대효과

고객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리스크를 제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FP의 전문성을 향상하고, FP의 경쟁력 있는 차별성을 확보하자.



경영인 정기보험의 탄생 비화 : 고객과 원수사의 니즈 결합

1. 사업자의 비용처리는 절세로 직결
2.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없이 회사 돈으로 부담하고 보장도 검할 수 있음.
3. 정기보험이지만 종신보험보다는 환급률이 좋은 상품 필요
4. CEO의 퇴직금 마련이라는 취지 어필
5. 원수사 입장에서는 고액 계약 체결 가능성 큼
6. 세법적인 검토 및 고객 요구에 부합한 상품 필요에 의해 탄생



경영인 정기보험의 탄생 비화 : 세법적인 검토를 토대로 탄생

▶ 세법의 이해가 필요

법인, 법인세과-221 , 2013.05.10

관련주제어 ▶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▶ 손금의 범위

[제 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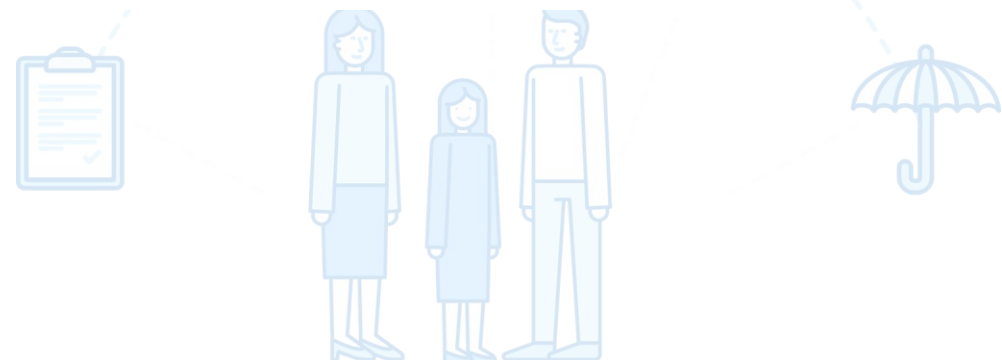
임원을 피보험자로,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

[회 신]

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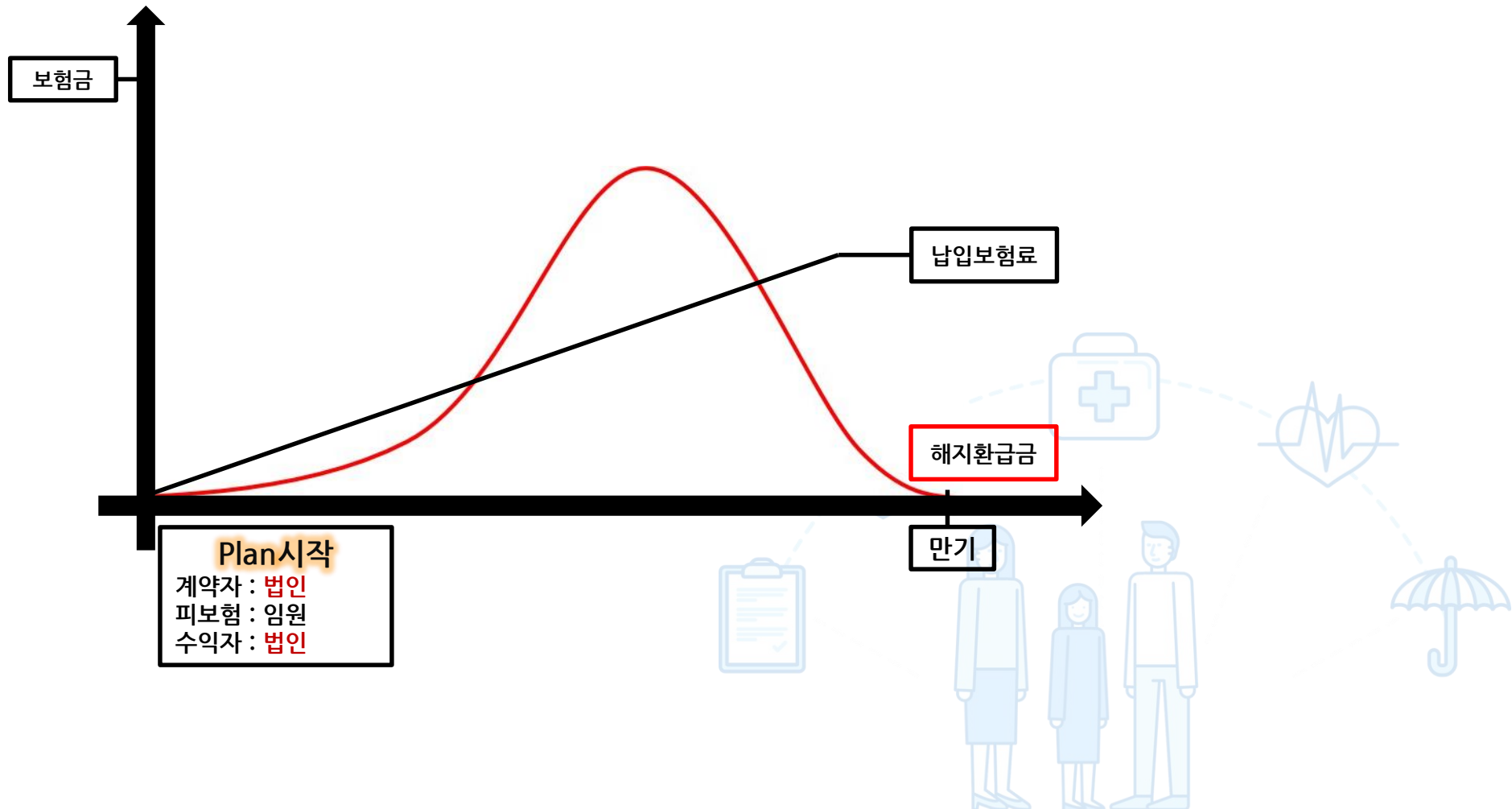
○ 법인세과-219(2013.05.09)

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임원(대표이사 포함)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,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,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


경영인 정기보험의 탄생 비화

▶ 세법과 CEO요구에 부합한 경영인정기보험의 구조



경영인 정기보험의 탄생 비화 : 세법의 이해 필요

[제목]

법인, 서면-2018-법인-1779 [법인세과-1880] , 2018.07.18

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

관련주제어 ▶ 손금의 범위

[회 신]

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**보장성보험**에 가입한 경우, 법인이 납입한 **보험료**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**보험료**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**손금**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**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**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**보험료**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**손금**에 산입하는 것이며
상기 **보장성보험**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



경영인 정기보험의 소송 판례(민사)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8-09-14

서울고등법원

제10민사부

판결

사 건 [redacted] 손해배상금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피고, 항소인 1. [redacted] 주식회사
2. B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8. 29. 선고 [redacted]
변론종결 2015. 5. 22.
판결선고 2015. 8. 21.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8-09-14

대법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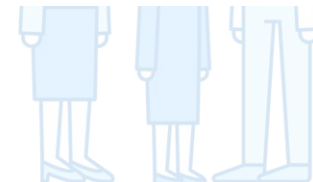
제1부

판결

사 건 [redacted] 손해배상금
원고, 상고인 주식회사 A
피고, 피상고인 1. [redacted] 주식회사
2. B
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. 8. 21. 선고 [redacted]
판결선고 2018. 8. 30.

주 문

-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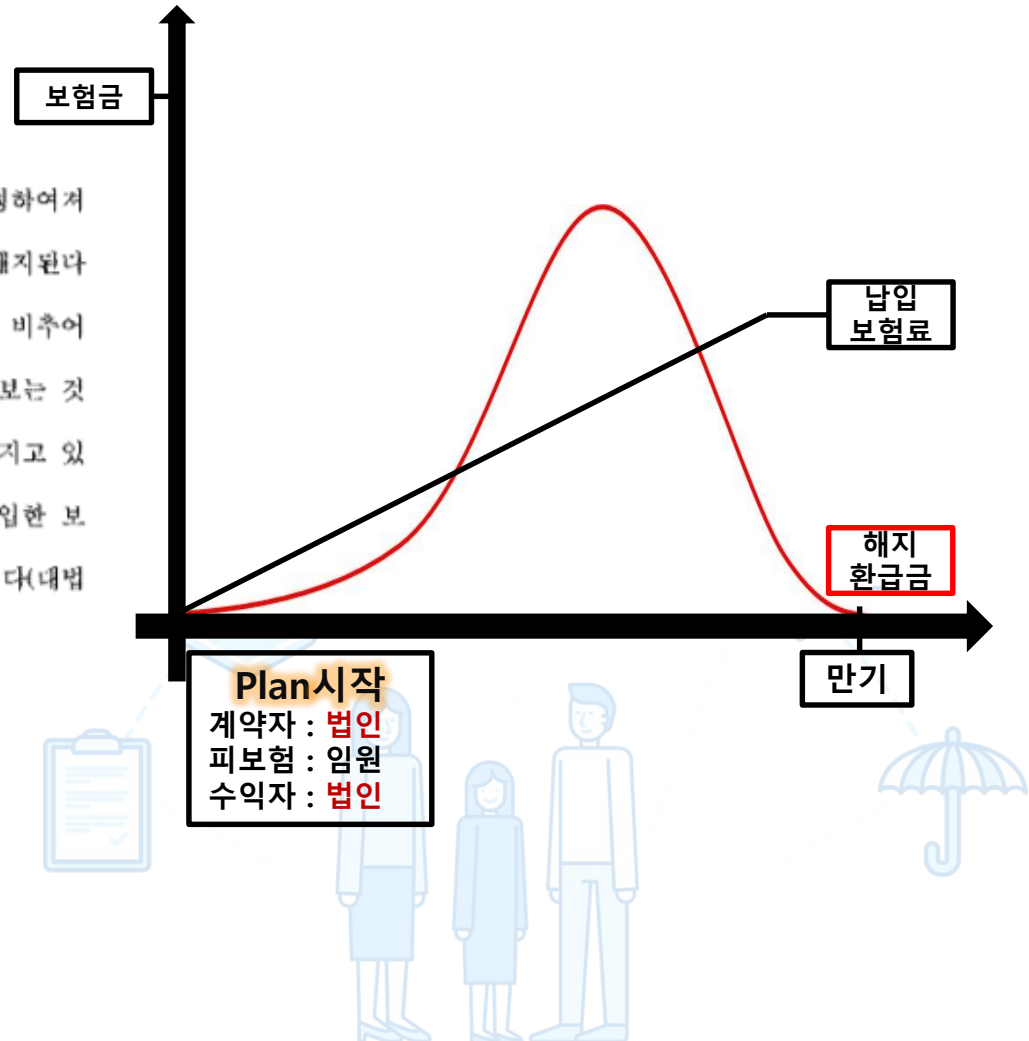


경영인 정기보험의 소송 판결문 내용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8-09-14

표이사를 번갈아가며 말아오고 있는 원고의 임원으로서 그 정년 또한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, 장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증도에 해지될 것인지 여부, 증도에 해지된다면 어느 시점에 해지될 것인지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이 비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, 그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만큼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해당 납입연도에 바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(대법



경영인 정기보험의 가입 설계 시 주의사항

1. 납입기간을 전기납으로 설정한다.
2.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것은 기본
3. 종신보험의 비용처리 영업은 가급적 지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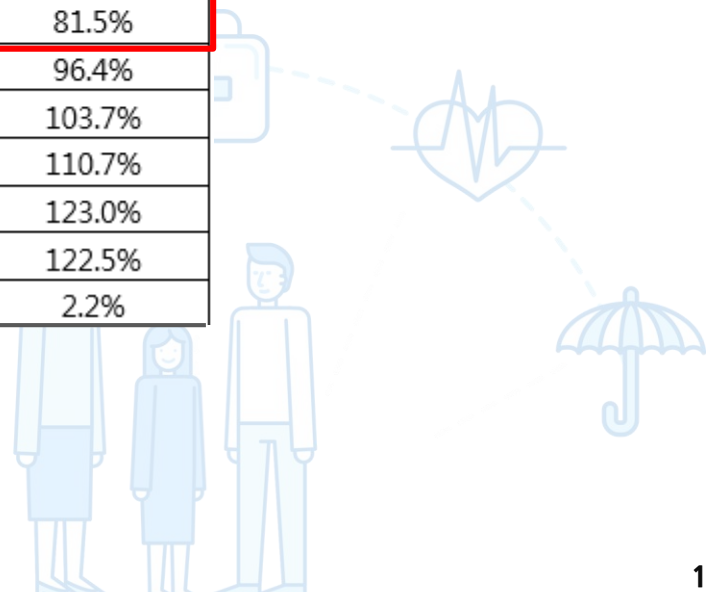


경영인 정기보험의 가입설계서 상담은 이렇게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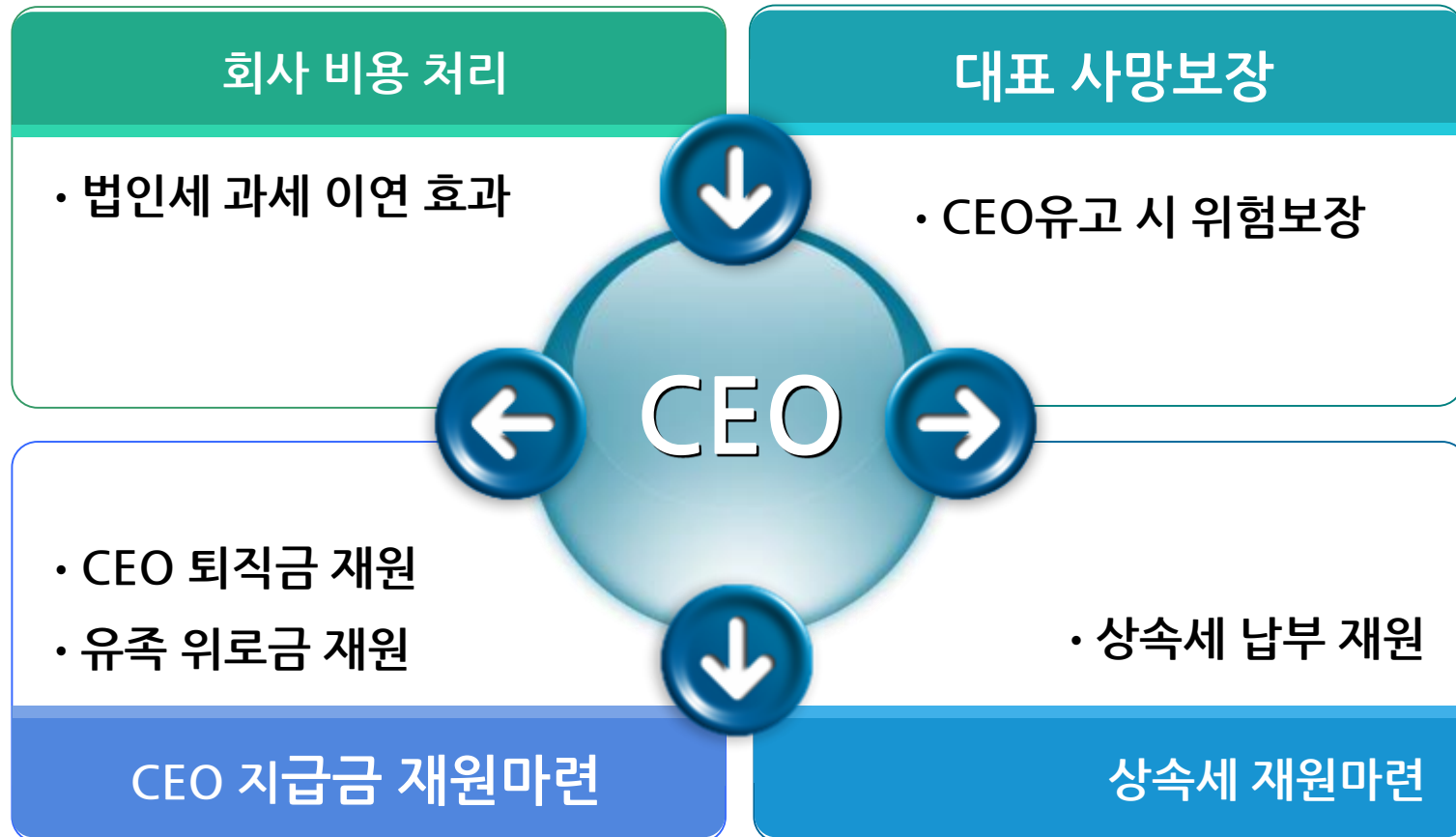
[기준: 보험가입금액 1 억원, 남자 40 세, 90 세만기, 전기납, 단위: 만원]

구 분		최저보증이율 가정 (최저해지환급금으로 최저보증)		2016년 4월 현재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(2.95%) 가정	
경과 기간	납입 보험료(A)	해지 환급금(B)	환급률 (B/A)	해지 환급금(D)	환급률 (D/A)
3개월	220	0	0.0%	0	0.0%
6개월	441	0	0.0%	0	0.0%
9개월	662	0	0.0%	0	0.0%
1년	883	0	0.0%	0	0.0%
2년	1,766	640	36.2%	641	36.3%
3년	2,649	1,601	60.4%	1,603	60.5%
5년	4,416	3,592	81.4%	3,597	81.5%
10년	8,832	8,495	96.2%	8,517	96.4%
15년	13,248	13,679	103.3%	13,733	103.7%
20년	17,664	19,444	110.1%	19,550	110.7%
30년	26,496	32,302	121.9%	32,587	123.0%
40년	35,328	42,681	120.8%	43,276	122.5%
50년	44,160	0	0.0%	986	2.2%

※ 위 표는 단순 예시 일 뿐입니다. 고객 상담자료로 사용은 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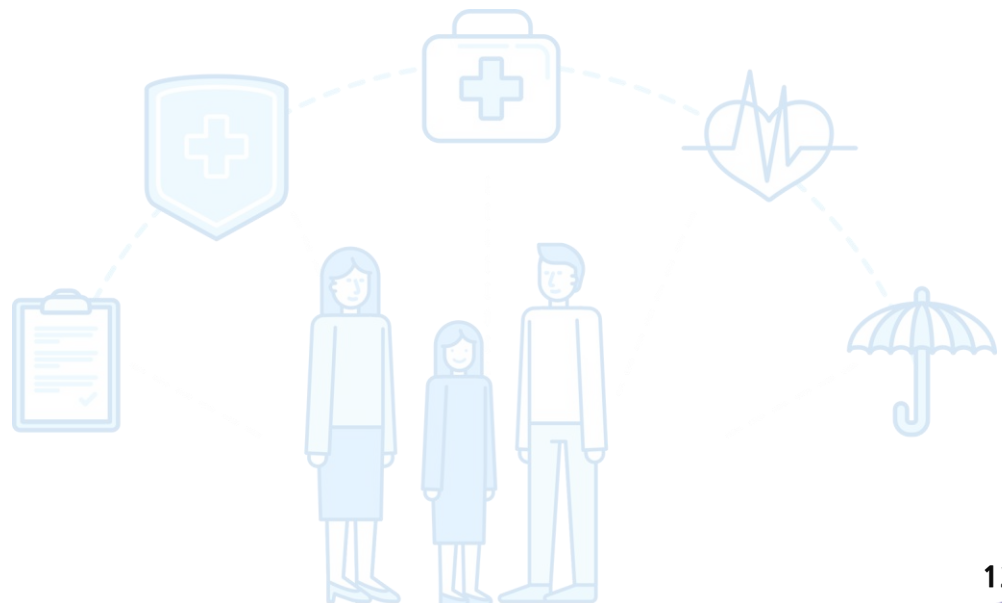


경영인 정기보험의 장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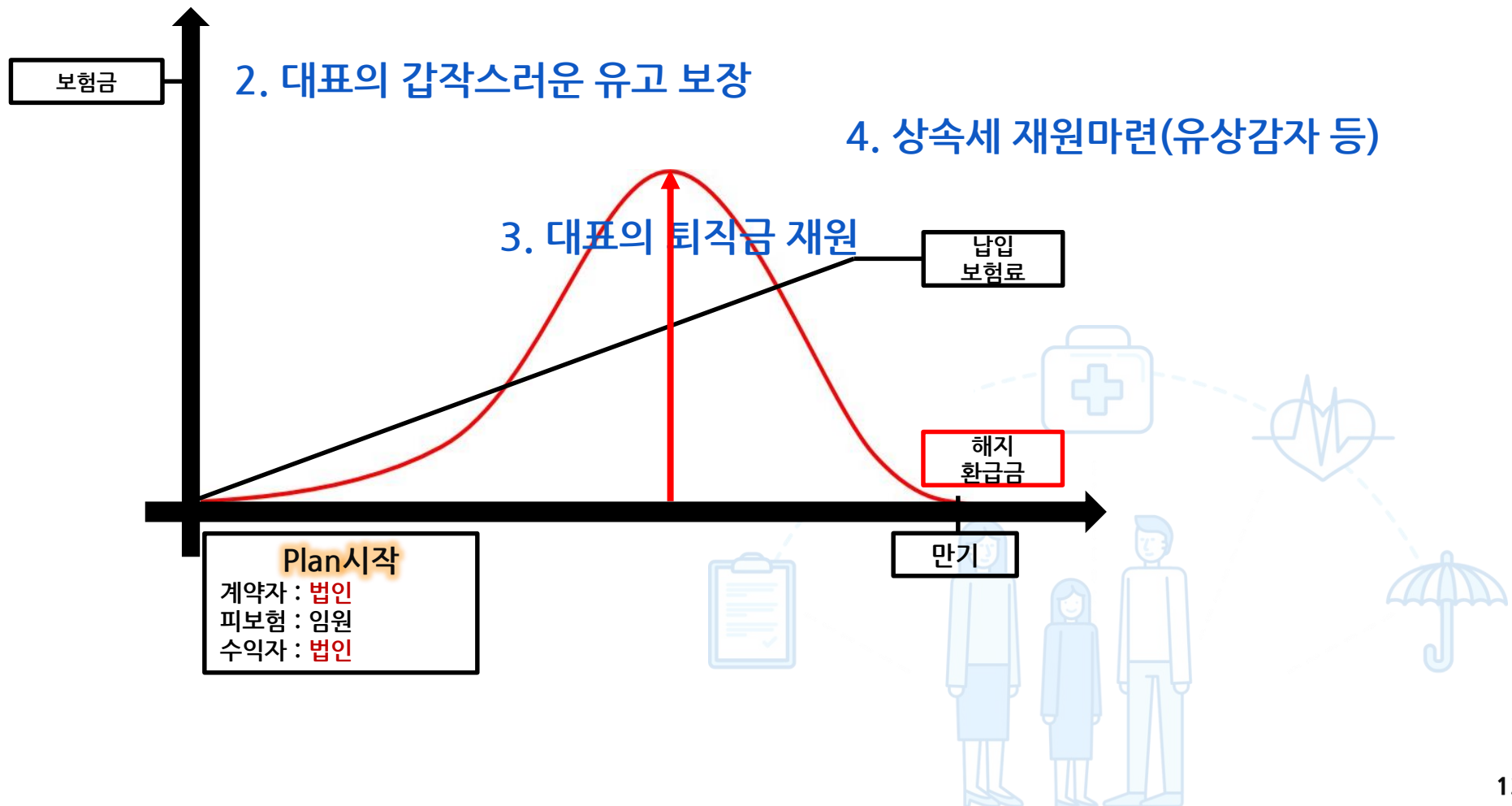
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시 상속세 재원 활용 플랜

1. 사망보험금을 법인이 수령한다.
2. 법인에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준다.
3. 가업승계가 아니라면 법인에서 유상감자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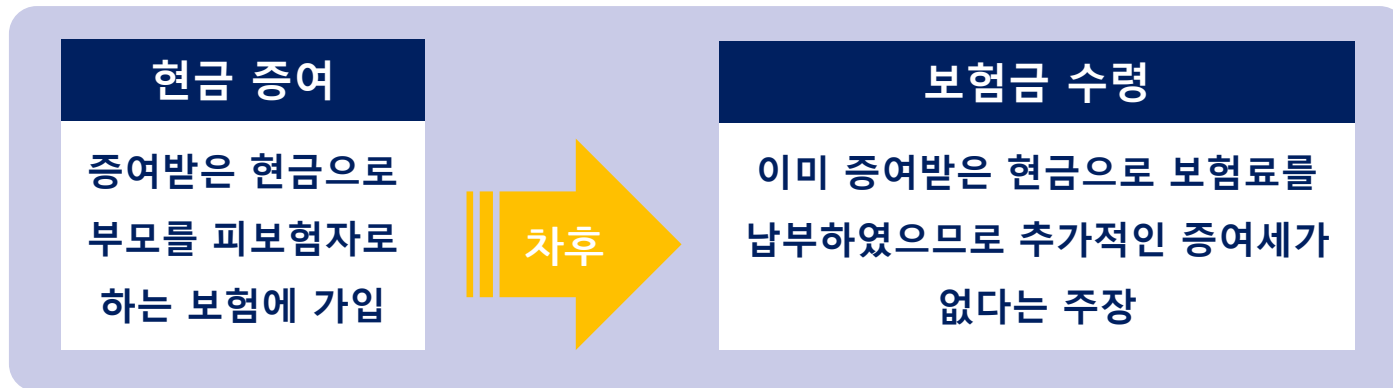


경영인 정기보험의 장점

1.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



보장성 보험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절세 전략

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4조 ①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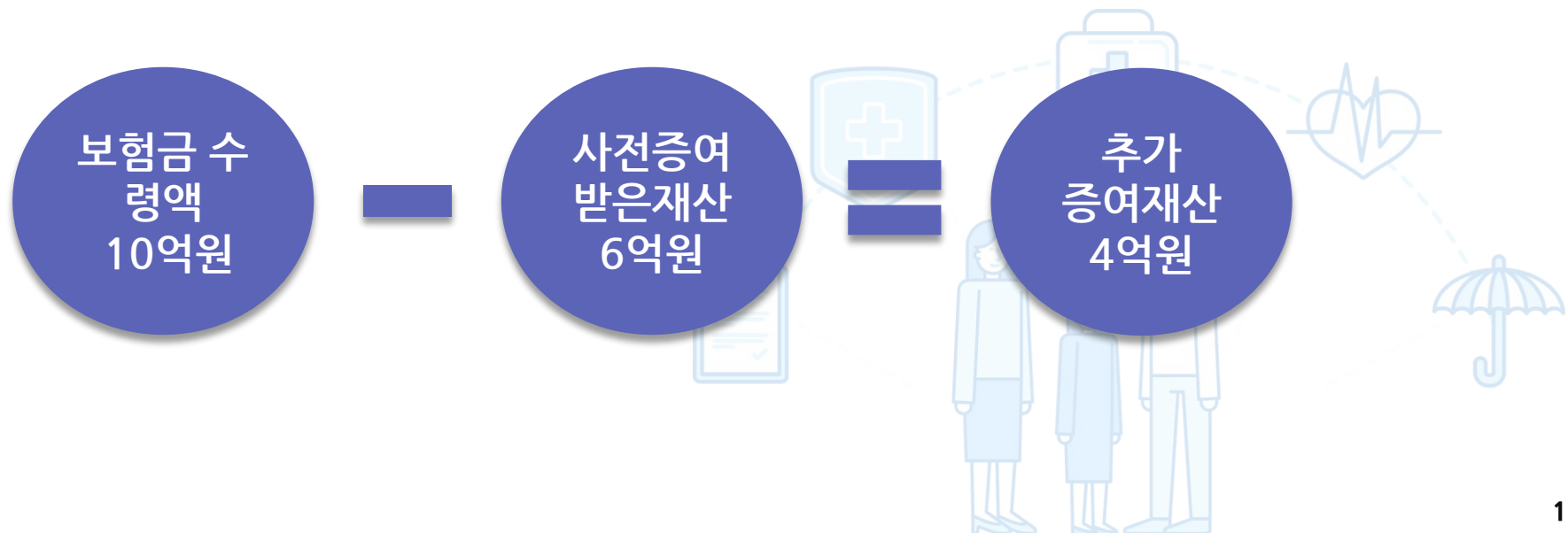
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(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2. 15.>



보장성 보험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절세 전략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4조 ①항 2

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: **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**



보장성 보험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절세 전략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4조 1항 2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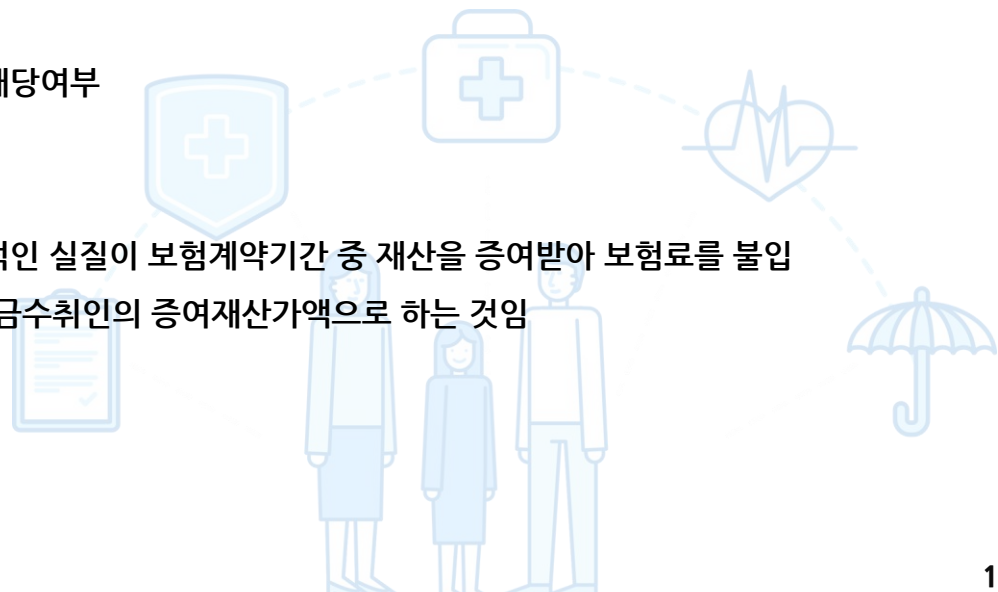
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: **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**

[제 목] 상증, 재산세과 - 616, 2011. 12. 26

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

[요 지]

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보험계약기간 중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는 수취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



보장성 보험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절세 전략

보험 가입

계약기간에 부모가
보험료 납부 완료

납입후

보험을 증여

보험증권을 증여 신고하면 보험금 수령 시
추가적인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다는 주장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4조 1항 2호

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
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: **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
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**

